

2023학년도 1학기 학력진단평가 2학년 민사법 [OX형] 답안

출제자 : 김덕중 교수
 시험일시 : 2023.03. 03.(금) 15:10 ~ 17:10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1	○	20년 제1차 변모. 문 19.	
2	X	제9회 변시. 문 21.	
3	X	제8회 변시. 문 22.	
4	○	21년 제1차 변모. 문 18.	
5	X	21년 제1차 변모. 문 18.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입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음
6	X	21년 제3차 변모. 문 11.	
7	○	21년 제3차 변모. 문 12.	
8	○	제10회 변시. 문 23.	
9	○	제9회 변시. 문 19.	
10	X	제7회 변시. 문 17.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함. 그런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물권적청구권은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없고,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도 불가함
11	○	제9회 변시. 문 15.	
12	○	제8회 변시. 문 21.	
13	○	21년 제2차 변모. 문 17.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자체만으로는 적극적인 권리변동이 아닌 점, 압류·가압류된 채권의 경우 기본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인 점을 고려할 때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14	X	제7회 변시. 문 24.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함.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사안에서 Z토지에 대한 병 소유 지분 가액은 4,000만 원이고, 피담보채권액은 3,000만 원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 범위는 1,000만 원임
15	X	20년 제3차 변모. 문 21.	B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행해지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전부명령은 무효임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16	X	제9회 변시. 문 29.	
17	X	20년 제3차 변모. 문 22.	
18	X	제9회 변시. 문 33.	
19	○	제8회 변시. 문 31.	
20	○	제8회 변시. 문 31.	
21	○	제8회 변시. 문 14.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외측설의 태도(판례)에 의하면 같은 단독부담부분인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만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함
22	X	제10회 변시. 문 22.	
23	○	제11회 변시. 문 23.	
24	○	제11회 변시. 문 27.	
25	○	제11회 변시. 문 29.	
26	○	제11회 변시. 문 8.	
27	X	22년 제1차 변모. 문 22.	
28	X	22년 제3차 변모. 문 30.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이 있는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연대채무에서 상계는 절대효 사유(제418조 제1항)이고, 부진정연대채무에서도 상계는 판례상 절대효 사유임
29	○	제10회 변시. 문 19.	
30	X	제10회 변시. 문 19.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31	○	20년 제3차 변모. 문 28.	
32	○	20년 제3차 변모. 문 28.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그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33	○	제10회 변시. 문 27.	
34	X	제9회 변시. 문 59.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음.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
35	X	제10회 변시. 문 32.	
36	○	제9회 변시. 문 28.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를 할 수 있다고 보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부정함. 또한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乙)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임. 결국 병은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음
37	X	제10회 변시. 문 29.	
38	○	제11회 변시. 문 8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와 같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이익이 중극적인 것이 아니므로 등기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39	X	제11회 변시. 문 19.	
40	X	제9회 변시. 문 28.	
41	X	20년 제2차 변모. 문 26.	
42	X	22년 제1차 변모. 문35.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43	○	22년 제2차 변모. 문29.	
44	X	22년 제2차 변모. 문29.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 을 요건으로 하는데,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비로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음. 그러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유익비상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음
45	X	21년 10회 변시. 문27.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46	X	제8회 변시. 문 7.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최초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인정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47	X	제11회 변시. 문 11.	
48	X	제11회 변시. 문15.	
49	X	제10회 변시. 문 5.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함. 사안에서 1998. 5. 18.부터 2차 취득시효가 진행되고, 그 기간 중인 2016. 5. 18. 0 명의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자 丙은 D에 대하여 2차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50	X	제9회 변시. 문9.	
51	X	22년 1차 변모. 문19	
52	X	20년 9회 변시. 문13.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단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53	X	20년 9회 변시. 문13.	
54	○	제10회 변시. 문14.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음
55	X	제10회 변시. 문6.	
56	X	제9회 변시. 문12.	
57	X	제9회 변시. 문17.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의 변제가 장애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사안의 경우, 전세권저당권 설정 당시 반대(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계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음
58	X	제9회 변시. 문12.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서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함.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음
59	○	20년 1차 변모. 문11.	
60	○	제11회 변시. 문16.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61	○	제11회 변시 문17.	
62	X	제11회 변시 문20.	
63	○	20년 3차 변모 문10.	
64	○	제10회 변시 문6.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토지가 타인에게 경락되어 민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건물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권 관계도 이전받게 되는바, 민법 제304조 등에 비추어 건물 양수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소멸시켰다고 하더라도<문제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그 건물 양수인은 물론 토지 소유자도 그 사유를 들어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14684 판결)
65	X	제9회 변시. 문 5.	
66	○	20년 제1차 변모. 문 11.	
67	○	제11회 변시. 문 18	을은 정당한 양도담보권자임. 양도담보설정자인 갑과 사이에 1,000만 원의 추가 담보약정도 유효함. 대외적인 소유자는 양도담보권자인 을이고 같은 무권리자임(신탁적소유권이전설). 갑의 병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로서 병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함. 다만, 병의 선의취득 여부가 문제되는바, 병의 점유취득 형태가 점유개정이므로 선의취득의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함. 따라서 병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음
68	○	21년 2차 변모 문26.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음(민법 제352조) . 따라서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함으로써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
69	X	제9회 변시 문28.	
70	○	19년 제2차 변모. 문 29.	
71	X	20년 3차 변모 문16.	
72	X	제10회 변시 문21.	
73	○	21년 1차 변모 문13.	
74	○	20년 3차 변모 문16.	
75	○	22년 1차 변모 문16.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76	○	제8회 변시 문13.	
77	○	제9회 변시 문1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 이어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음
78	○	21년 2차 변모 문12.	
79	○	21년 3차 변모 문28.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채무자는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먼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비로소 상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처럼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상계에 대한 기대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에 우선할 수 없음
80	X	제9회 변시 문7.	